

: 10-01- -02
:
:
:
: (: / T. 02-522-7284)
: [] ‘ 「 ’ () ‘ ’
:
: 2010. 1. 25.()
: 13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민변노동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공 제2009-109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반대(반대 사유 의견서 별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단 체 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전화번호 : T. 02-522-7284 / F. 02-522-7285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담당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96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철도운전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 비교 및 문제점

(1) 시행규칙의 비교

순 번	철도안전법	동법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2	<p>제16조(교육훈련)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③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④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생략)</p>	<p>제20조(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p> <p>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 이 른교육과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은 실제 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과 교육훈련 시간은 별표 7과 같다.</p> <p>④ 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p>	<p>제20조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란 기능교육을 말하며,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⑥ (현행과 같음)</p>

	<p>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⑤ 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교육훈련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	--	--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는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이 모두 포함되나,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능교육으로 한정해버림.

(2) 현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간(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7)

1. 일반응시자

교육과정	현행 교육시간			개정안	
	이론교육	기능교육	합계	기능교육	합계
고속철도차량	140	280	420	-	-
디젤차량	650	470	1,120	470	470
제1종 전기차량	550	470	1,020	470	470
제2종 전기차량	430	410	840	410	410
철도장비	250	170	420	170	170

(단위 : 시간)

2. 운전면허소지자

소지면허	교육과정	현행 교육시간			개정안	
		이론교육	기능교육	합계	기능교육	합계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고속철도	140	280	420	-	-
디젤차량	제1종, 제2종	70	35	105	35	35

	전기차량					
제1종 전기차량	디젤, 제2종 전기차량	70	35	105	35	35
제2종 전기차량	디젤, 제1종 전기차량	140	70	210	70	70
철도장비	디젤차량	440	260	700	260	260
	제1종 전기차량	340	260	600	260	260
	제2종 전기차량	250	170	420	170	170

(단위 : 시간)

3.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경력	교육과정	현행 교육시간			개정안	
		이론교육	기능교육	합계	기능교육	합계
철도차량운 전업무보조 경력 1년 이상 또는 철도장비운 전업무수행 경력 3년 이상	디젤차량 또는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70	100	370	100	100
철도차량운 전업무보조 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 장 경력 2 년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30	100	330	100	100
철도차량운 전업무보조 경력 1년 이 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85	20	105	20	20
철도 건설 및 유지보 수 장비 작업경력 1 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40	65	105	65	65

(단위 : 시간)

4.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경력	교육과정	현행 교육시간			개정안	
		이론교육	기능교육	합계	기능교육	합계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485	145	630	145	145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485	145	630	145	145
	전기차량 운전면허	350	140	490	140	140
	철도장비 운전면허	160	85	245	85	85

(단위 : 시간)

5. 일반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가.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	이론교육이 교육훈련 내용에서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이론교육의 공통과목이던 '철도관련법'에 대한 정의가 불필요해진 것임
-	마. 교육시간은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성적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기능교육에서조차 교육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특별규정을 둬. - 기능교육과목이란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비상시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훈련이 필요한 것임.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서의 교육과목을 기능교육으로 한정하고, 교육시간을 이론교육시간만큼 단축시킴.

(3) 개정안의 위법성

먼저, 개정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능교육으로 제한한 것은 법

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이다.

철도안전법 제16조(교육훈련)

-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즉 철도안전법 제16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전 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개정안이 자의적으로 교육훈련의 범위를 기능교육으로 한정하고, 이론교육과목과 시간을 모두 배제한 것은 법률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목에서 이론교육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기능교육시간조차 축소한 것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철도안전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하고 규정함으로써 철도안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철도차량운전면허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운전면허 취득요건을 완화한 것은 기관사 양성요건을 완화하여 파업시 대체기관사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도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위하여 운전면허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목에서 이론교육을 배제하고 그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기능교육시간마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평가성적기준에 따라 20%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철도안전을 위해 도입한 운전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응시자격 및 시험단계에 대한 비교 및 개정안의 문제점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철도안전법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p>○ 시험의 종류</p> <p>1. 신체검사(법제12조)</p> <p>2. 적성검사(법제15조)</p> <p>3. 교육훈련(법제16조)</p> <p>4. 필기시험(법제17조)</p> <p>5. 기능시험(법제17조)</p> <p>제17조(운전면허시험)</p> <p>②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p> <p>○ 시험의 단계</p> <p>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전문훈련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료 ⇒ 필기시험 ⇒ 기능시험</p>	<p>-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후문)</p> <p>-운전시험면허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p> <p>3.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원서 접수일 이전 3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p> <p>(제26조 제1항 제3호)</p> <p>○ 시험의 단계</p> <p>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전문훈련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료 ⇒ 필기시험 ⇒ 기능시험</p>	<p>필기시험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후문 개정)</p> <p>○ 시험의 단계</p> <p>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필기시험 ⇒ 교육훈련 이수 ⇒ 기능시험</p>

○ 필기시험 응시자격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교육훈련 수수료	○ 필기시험 응시자격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교육훈련 수수료	○ 필기시험 응시자격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	-------------------------------

(2) 응시자격 및 시험단계에서의 개정안의 위법성

개정안 제24조 제2항에서는 현행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를 "필기시험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이라고 정함으로써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응시자격 및 시험단계를 변경하고 있다.

즉, 현행 시행규칙에서의 면허시험의 단계를 보면,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전문훈련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수료 ⇒ 필기시험 ⇒ 기능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필기시험 ⇒ 교육훈련 이수 ⇒ 기능시험**으로 그 단계를 변경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시험 단계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의 단계(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 ⇒ 전문훈련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수료 ⇒ 필기시험 ⇒ 기능시험)**에 저촉되는 것이다.

철도안전법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철도안전을 고려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만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필기시험 응시자격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다.

3. 운전면허갱신시 이론교육 생략 및 교육시간 단축의 문제점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철도안전법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p>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p> <p>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u>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u></p>	<p>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p> <p>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동등 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p> <p>1. 관제업무</p> <p>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업무</p> <p>3.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p> <p>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u>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운전면허갱신신청일 전까지 각각 20시간 이상받은 경우</u>를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에 <u>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u>를 말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	--	--

(2) 개정안의 문제점

개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20시간으로 단축시키고, 그 교육을 기능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면허제도를 둔 취지가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한 것이

므로(법제16조 제1항), 운전면허 갱신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시와 동일하게 철도관련법 등의 이론 및 기능교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처럼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교육을 기능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은 철도차량의 운전에는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한 운전면허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4. 운전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수습·교육기준 백지위임의 문제점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철도안전법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p>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①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u>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②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7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p> <p>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p> <p>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방법 및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7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및 교육의 방법·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철도운영자등은 신규면허취득자가 실무수습·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제37조 제2항 관련하여 운전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요건

으로서 동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별표 12]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 제2항 관련)

1. 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선로·신호등 시스템 ·운전취급 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 기기 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2.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모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선로·신호등 시스템 ·운전취급 관련 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 기기 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3.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고 :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안에서는 위 [별표 12]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운전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실무수습·교육기준을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아무

런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철도운영자에게 백지 위임하고 있다.

(2) 개정안의 문제점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실무수습이수 등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철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실무수습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실무수습기준을 철도운영자의 재량사항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철도안전 운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철도운영자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실무수습요건을 재량으로 완화할 경우 철도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안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개정안은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운전실무수습·교육기준)을 건설교통부령이 아닌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임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나 버렸다.

5. 맺는 말

철도기관사의 양성제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파업기관사 대체와 같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기관사의 공급을 자유화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철도기관사의 양성제도는 철도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기관사를 적정하게 배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위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시행규칙이 법률이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률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을 기관사나 사인에게 백지로 위임하여 재량사항으로 만드는 것은 법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2010. 1. 5.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양질의 기관사를 배출하고자 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법률이 예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받은 내용을 기관이나 사인에게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법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0 1 25

()